

## 군산시 공고 제2015-1661호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폐지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5일

## 군 산 시 장

###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규칙 폐지 예고

#### 1. 폐지이유

(유사·중복) 중앙정부 연구용역 결과,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거나 정비가 필요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 복지재정 효율화 및 국정평가 반영 등을 고려하여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사업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제1조(목적),3조(장학생의 자격) 등】 과 중앙정부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는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 등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한 유사·중복 사업으로 정비 추진

### 3. 의견제출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2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1) 폐지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복지지원과(전화 454-3142, 팩스 454-313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기초생활계

(전화 454-3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조례 제675호

##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특별장학금 및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장학생)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 성적이 총점 95점이상인 자<개정 2005.04.30><개정 2005.04.30>

2. (일반장학생)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개정 2005.04.30>

②각호 1항의 자격 요건은 갖추고는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지급시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2005.04.30>

**제5조(선발)** 시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는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후 시장이 결정한다.

②<삭제 2005.04.30>

**제6조(장학생의 정원)** 군산시에서 조성한 장학기금의 이자 발생액에 따라 시장이 특별장학생 20%, 일반장학생 80%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군산시 저소득층장학기금계좌를 설치한다.

②조성기금에 대하여는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하며,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03.06>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장학기금의 이자 발생에 따라 년1회 지급하며, 통장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부모형제에게 전달한다.<개정 2005.04.30>

**제9조(지급 정지)** ①추천 과정에서 제3조제2항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학교 성적이 불량한 자가 추천된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②장학금을 타 목적에 사용하였거나 부정한 사실이 확실할 때 이를 회수하거나 지급을 정지한다.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국가발전 및 조국의 선진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영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부시장으로, 기금분임운영관은 복지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담당으로 한다. <개정 99.01.13,2005.04.30,2005.11.21,2007.01.20>

**제12조(기금관리)**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군산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1.13 조례제 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1.13 조례제 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06 조례제 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4.30 조례제 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21 조례제 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①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복지지원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개정 99.01.13,2007.01.30, 2012.07.26>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초생활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9.01.13,2005.11.21,2007.01.30>

**제3조(선발기준)** 장학생은 지급시에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발한다.<개정2005.11.21>

**제4조(구비서류)**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 1통(별지 제2호서식)
2. 읍·면·동장 추천서 1통(별지 제3호서식)

**제5조(공고 및 통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이를 게시공고하고 당해 학교장과 읍·면·동장 및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기금의 관리)** 시장은 장학기금의 지급 및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지원자 명부(별지 제4호서식)와 장학기금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년도)**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기금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 년도에 준한다.

**제8조(지원대상)** 이 규칙에서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개정2005.11.21>

**제9조(준용규정)** 기금운영에 있어서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영한다.

**제10조(세칙)** 본 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1995.01.19 규칙제 0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1.13 규칙제 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21 규칙제 3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장 학 생 지 원 서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주 소	군산시	읍·면·동	번지	통	반
학 교 명		학 과		학 년 반	

본인은 군산시 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 이에 지원합니다.

- 첨부서류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읍·면·동장 추천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보호자 성명 :  
(지원자와의 관계)

군 산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 장 학 생 추 천 서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주 소	군산시	읍면·동	번지	통	반
학 교 명		학 과		학 년 반	
출신학교명					
성 적	평균 점		학 년 석 차	학년총	명중 등
품 행		학 습 태 도		사 상	

위 학생은 본교 재학생(졸업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므로 귀 시 장학금 지급조례의 규정에 의거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옵기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장

군 산 시 장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 장 학 생 추 천 서

성 명 (한자)	( )					
주 소	군산시	읍면동	번지	통	반	
학 교 명	학교					
재산상태						
보호구분	거택	시설		자활		
월 평 균 수 입	총 수입 : 천원 (가구당 1인당 월평균 수입 : 천원)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직 업	비 고

위 학생은 본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들의 귀감이 되는 학생이나 생활상태가 극히 빈곤하여 군산시 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로 인정되옵기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군 산 시 장 귀 하





● **군산시 공고 제2015-1667호**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3일

군산시장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예고방법을 상위법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맞게 정비(안 제5조)
  - 시보나 시 홈페이지, 시·읍·면·동 게시판 및 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 시보 외에도 시 홈페이지, 시·읍·면·동 게시판 및 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 나. 상위법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맞게 조문 수정(안 제8조)
  - 시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수수료 적용 조례인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변경(안 제9조)
  - 행정정보공개수수료 → 정보공개수수료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13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방법 : 전화,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 1) 주소 : (우)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 2) 전화 : 063-454-2343
  - 3) 팩스 : 063-452-8157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 : 063-454-23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입법하고자”를 “입법하고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보나”를 “시보 외에도”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정보공개수수료”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p> <p>1. <u>입법하고자</u>하는 자치법규의 제명</p> <p>2. ~ 4. (생략)</p> <p>② 입법예고문은 <u>시보나</u> 시 홈페이지, 시·읍·면·동 게시판 및 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 ⑤ (생략)</p>	<p>제5조(예고방법) ① ----- ----- ----- ----- -----.</p> <p>1. <u>입법하고자</u> ----- -----</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 <u>시보 외에도</u>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② (생략)</p> <p>③ <u>시장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u></p> <p>④ <u>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u></p>	<p>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lt;삭제&gt;</p>
<p>제9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생략)</p>	<p>제9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현행과 같음)</p>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  
 료 징수조례」 [별표 3] 행정정  
 보공개수수료의 해당 요금을 적  
 용하여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삭제

② -----  
 -----  
 ----- 정보  
공개수수료-----  
 -----  
 -----.

③ 삭제

● 군산시 공고 제2015-1668호

군산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3일  
군산시장

**군산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자치법규 운영중 현실에 맞지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및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입법안 심사시 첨부서류 추가(안 제8조)
  -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나. 조례규칙심의회 정기회의 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18조)
  -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 →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 다. 조례규칙심의회 의안제출시 「전라북도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첨부서식 신설(안 제20조)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요구서 : 별지 제19호 서식
- 라. 의원발의, 수정의결된 조례안 공포 및 재의요구 기간을 「전라북도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에 맞추어 2일에서 3일로 변경(안 제24조)
- 마. 의결안 도 보고서식 변경(안 제24조)
  - 조례(규칙) 제정·개폐 상황 보고 : 별지 제12호 서식
- 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근거 법령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불가)에 따라 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제9호 서식
-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13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화,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 1) 주소 : (우)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 2) 전화 : 063-454-2343
- 3) 팩스 : 063-452-815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 : 063-454-23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 호

## 군산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자치법규”를 “자치법규의”로, “또는 폐지(이하“개폐””를 “또는 폐지(이하 “개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질의”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및 부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군산시장(이하“시장””을 “군산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제5호 중 “결과”를 “결과(규제심사 등)”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자료( 규제심사 등)”를 “자료”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를 “제7조의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4.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제8조제3항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제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목요일”을 “수요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 의”를 “호의”로 한다.

제20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안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심의요구서에 붙여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 중 “2일”을 “3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고서식”을 “조례(규칙) 제정·개폐 상황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의회 및 심의회 의결을 거친”을 “도지사로부터 공포 절차 추진 지시를 통지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지사로부터 규칙”을 “도지사로부터”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입법"이란 <u>자치법규</u>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개폐"라 한다)를 말한다.</li> <li>3. ~ 5. (생 략)</li> <li>6. "<u>질의</u>"란 <u>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같다)</u>,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li> <li>7. (생 략)</li> </ol>	<p>제3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 <u>자치법규의</u> ----- ----- 또는 폐지(이하 "개폐" "-----).</li> <li>3. ~ 5. (현행과 같음)</li> <li>6. "<u>질의</u>"란 <u>법률·대통령령·총리령·및 부령(이하 "법령"이라 한다)</u>----- ----- ----- ----- ----- ----- ----- -----.</li> <li>7. (현행과 같음)</li> </ol>
<p>제5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법규의 주관과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장과의 협의와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거쳐 <u>군산시장</u> (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 정도를 감안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지</p>	<p>제5조(방침결정) ----- ----- ----- ----- ----- <u>군산시장</u> (이하 "<u>시장</u>"----- -----.</p>

정된 주관과장은 관련부서의 입  
법자료를 수합하여 입법안을 작  
성한다.

-----  
-----  
-----.

제7조(입법안 작성) ①·② (생  
략)

제7조(입법안 작성)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주관과장은 방침으로 결정된  
입법안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하여 입법안을 작성하  
여야 한다.

- 1. ~ 4. (생 략)
- 5.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 6. 입법예고 결과 요약내용
- 7. (생 략)
-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규제심사 등)

- 1. ~ 4. (현행과 같음)
- 5. ----- 결  
과(규제심사 등)
- <삭 제>
- 7. (현행과 같음)
- 8. ----- 자  
료

제8조(제출 및 심사) ① 주관과장  
은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제7  
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심사  
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제출 및 심사) ① -----  
--- 제7조의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  
-----  
-----.

- 1.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결과  
서
- 2. (생 략)
- <신 설>

- <삭 제>
- 2. (현행과 같음)
- 3.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

<신 설>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생 략)

③ 주관과장이 제출한 입법안에 대하여 법제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형식적 심사

가.·나. (생 략)

다.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실

시 여부

2. (생 략)

제9조(반려 등) 법제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반려하거나 보완기간을 정하여 보완등을 요구할 수 있다.

1.·2. (생 략)

3.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

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 6. (생 략)

제18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유서

4.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5. 현행 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가.·나. (현행과 같음)

<삭 제>

2. (현행과 같음)

제9조(반려 등) -----  
-----  
-----  
-----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제18조(회의운영) ① -----  
-----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3. (생략)

제20조(의안제출) ①·② (생략)

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작성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제24조(심의회 의결안건의 처리 등) ①·② (생략)

③ 시의회에서 의원발의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안을 통보받은 주관과장은 의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조례안 내용의 위법·부당여부의 의견을 첨부하여 조례

-----  
- 수요일-----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심의회의 기능) -----  
----- 호의 -----  
-----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의안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안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심의요구서에 붙여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심의회 의결안건의 처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3일 -----  
-----

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④ 법제담당 부서장은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이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사전 보고 하여야 한다.

1. 보고서식 1부 (별지 제12호서식)

2. (생략)

⑤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법제담당 부서장이 공포예정 15일 전에 전라북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공포안 작성) ① 시의회 및 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법제담당 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2. (생략)

② 도지사로부터 규칙 사전 보고안에 대하여 공포기한 내 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 받은 법제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

-----  
-----.

④ -----  
-----  
-----  
-----  
--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1. 조례(규칙) 제정·개폐 상황 보고 --

2. (현행과 같음)

⑤ -----  
-----  
-----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

제25조(공포안 작성) ① 도지사로부터 공포 절차 추진 지시를 통 지받은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로부터 -----  
-----  
-----  
-----  
-----.

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  
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1. ~ 3. (생 략)

-----  
-----.  
1. ~ 3. (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서식]

##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제12조 관련)

성 명	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외 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청 구 종 류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군 산 시 장 인</p>	
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210mm×297mm(인쇄용지 60g/m<sup>2</sup>)

[별지 제6호서식]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제12조 관련)

청구종류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외 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			
수 입 인	성 명	(서명날인)	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날인)	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귀하</p>					
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210mm×297mm(인쇄용지 60g/m<sup>2</sup>)

[별지 제7호서식]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제12조 관련)

청구종류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채류 지)	(전화번호 : )		
수 임 인	성 명		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채류 지)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채류 지)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p>「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군 산 시 장 인</p>				
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210mm×297mm(인쇄용지 60g/m<sup>2</sup>)





[별지 제12호서식]

**조례(규칙) 제정·개폐 상황 보고**

□ 조례·규칙명 : ○○○조례안(제정·개정·폐지)

제안자	시·도지사(시·구청장·군수)( ), 의회의원( ), 주민( )		
규제개혁위원회	제 회	규 제 심 사 결 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회 의결( 년 월 일)		
의회 의결일	년 월 일	이 송 일	년 월 일
공포 예정일 (공포 게시 예정일)	( 년 월 일 )	재 의 요구 기 한	년 월 일
근거 법령	「 법」 제 조		
소관 부서	○○○도 ○○○과		
관련 중앙 행정 기관	○○○부 ○○○과		
제정·개폐사유	○		
주요 내용	○ (안 제○조) ○ (안 제○조) ○ (안 제○조)		
지자체 검토의견	○		
중앙부처 질의	○		
언론보도 등 동향	○		

[별지 제19호서식]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요구서

의안  
번호

제 - 호

심 의 안 건	군산시 ○○○○○조례(규칙)안
심의요구내용	붙임 조례(규칙)안에 대한 “가”, “부” 심의
사 유	○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 심의 하고자 함(조례의 경우) ○ 규칙 공포 전에 사전 심의 하고자 함(규칙의 경우)
관계 법조문 및 적용사유	○ 000법 제00조 ○ 000법 시행령 제00조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과장 ○○○

군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의장 귀하

● 군산시 공고 제2015-1684호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5일

군산시장

### 군산시 장사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가. 현행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 (2015.12.15까지)이며, 존속기간의 경과시 동 조례는 효력을 상실 그 동안 적립된 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기금을 사용(집행)할 수 있는 기간만큼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나. 복지지원과 장묘시설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직위를 개칭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기간을 5년으로 명시(안 제2조제3항)
- 나.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조성된 기금을 사용할 기간을 확보 (안 제3조)
- 다. 복지지원과 장묘시설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직위로 개칭(안 제12조, 제17조)

####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25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화,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 1) 주소 : (우)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 2) 전화 : 063-454-7952
- 3) 팩스 : 063-453-405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복지지원과(전화 : 063-454-79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기금의 조성기간은 2015.12.15.까지로 한다.

제3조 중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기금의 존속기간은 2017.12.15.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중 “복지시설계장”을 “장묘시설계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제2호 중 기금출납원 : 복지시설계장”을 제3호 기금출납원 : 장묘시설계장”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금의 조성)① (생략) ② (생략) &lt;신설&gt;</p>	<p>제2조(기금의 조성)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의 조성기간은 2015.12.15.까지로 한다.</p>
<p>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12.15.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12조(간사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복지시설계장, 서기는 장사업무 담당자가 된다.</p>	<p>제12조(간사 등) ----- ----- ----- <u>장묘시설계장</u>, ----- -----.</p>
<p>제17조(회계공무원)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2. 기금출납원 : 복지시설계장</p>	<p>제17조(회계공무원)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기금출납원 : 장묘시설계장</p>

군산시 고시 제 2015 - 142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2.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개정면 통사리 임대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변경
  - 가. 명칭 및 대표자 : (주)진경건설 대표이사 이정순
  - 나.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342, 407호(나운동 동아26빌딩)
3. 시공자 : 변경
  - 가. 명칭 및 대표자 : (주)진경건설 대표이사 이정순
  - 나.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342, 407호(나운동 동아26빌딩)
4. 사업내용 : 변경없음
  - 가. 사업위치 :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217번지
  - 나. 주택구분 : 공공건설임대주택
  - 나. 대지면적 : 20,936.0000m<sup>2</sup>
  - 다. 건축면적 : 4,396.4715m<sup>2</sup>
  - 라. 연 면 적 : 67,057.2220m<sup>2</sup>
  - 마. 건축규모 : 아파트 6동 17~25층, 492세대
 

- 전용 59.7246m <sup>2</sup>	180세대
- 전용 84.4755m <sup>2</sup>	88세대

- 전용 84.9562m<sup>2</sup> 134세대
- 전용 84.5076m<sup>2</sup> 90세대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사. 사업비 : 68,840,954천원

아. 사업기간 : 2015. 04. 01. ~ 2017. 04. 30.

#### 5. 주요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주체	부송건설(주)	(주)진경건설	
시 공 자	부송건설(주)	(주)진경건설	

6.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5년 11월 2일

7. 기타 자세한 사항의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 2015 - 143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2.

###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군산 당북리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변경없음
  - 가. 명 칭 : 에스엠주택건설주식회사
  - 나. 대표자 : 장길현
  - 다.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51, 대산빌딩5층
3. 시공자 : 변경없음
  - 가. 명 칭 : 주식회사대광건설
  - 나. 대표자 : 조태석
  - 다.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24
4. 사업내용 : 변경없음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61-1외 91필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 나. 대지면적 : 21,069.00m<sup>2</sup>
  - 다. 건축면적 : 4,014.5817m<sup>2</sup>
  - 라. 연면적 : 67,272.6949m<sup>2</sup>
  - 마. 건축규모 : 아파트 5동 29층, 469세대

## 바.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m <sup>2</sup> )	공용면적(m <sup>2</sup> )	공급면적(m <sup>2</sup> )	비고
84A형	민영주택	380	84.9959	24.7825	109.7784	
84B형	민영주택	46	84.9949	26.3697	111.3646	
84C형	민영주택	43	84.9768	26.5761	111.5529	

사.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 사업비 : 107,706,240천원

자. 사업기간 : 2015년 05월 01일 ~ 2017년 11월 30일

## 5. 주요 변경사항

가. 파일 위치 및 기초판 보강 변경

나. 지하주차장 스라브 일부 변경

나. 기타 변경사항 등

6. 설계도서 : 변경승인설계도서와 같음

7.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5년 11월 2일

8.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5-144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공원:운동시설-실내배드민턴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 도시계획시설(새들공원-운동시설)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군산시 고시 제2011-73, 2011.11.04)를 받아 시행중인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군 산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군산시 수송동 701-1번지 일원(새들공원내)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내용(변경)

구 분	시 설 명	시설 결정	실시계획		비 고
			당초	변경	
공간사업	새들공원 (근린공원6)	139,157㎡	5,009㎡	4,591㎡	녹지 418㎡ 제외

1)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2층, 건축면적 3,246.39㎡, 건축연면적 6,553.56㎡

2) 사업내용 : 배드민턴 15면, 조경 및 주차장 등

라.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체육진흥과)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1) 당초 : 2011. 11. 04. ~ 2015. 06. 30.
- 2) 변경 : 2011. 11. 04. ~ 2015. 12. 30.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단위 : m<sup>2</sup>)

순번	소재지	변경전				변경후				증·감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이름	주소	이름	주소	관리내용
1	수송동	710-1	전	217	217	710-1	전	217	217	-	군산시				
2	수송동	710-2	전	105	105	710-2	전	105	105	-	군산시				
3	수송동	710-3	전	225	225	710-3	전	225	225	-	군산시				
4	수송동	711-2	전	861	861	711-2	전	861	861	-	군산시				
5	수송동	703	전	698	698	703	전	698	698	-	군산시				
6	수송동	701-8	전	501	501	701-8	전	501	501	-	군산시				
7	수송동	701-9	전	445	445	701-9	전	445	445	-	군산시				
8	수송동	702-12	전	232	232	702-12	전	232	232	-	군산시				
9	수송동	711-1	대	64	64	711-1	대	64	64	-	군산시				
10	수송동	701-1	임	694	694	701-1	임	694	694	-	군산시				
11	수송동	702-13	임	358	358	702-13	임	358	358	-	군산시				
12	수송동	702-14	임	127	127	702-14	임	127	127	-	군산시				
13	수송동	788	공	1184.2	64	788	공	1184.2	64	-	군산시				
14	수송동	702-17	임	81	81	-	-	-	-	감 81	두병희	군산시 수송동 703	-	-	-
15	수송동	702-18	임	337	337	-	-	-	-	감337	두병희	군산시 수송동 703	-	-	-
계	15필지			6,129. 2	5,009	13필지		5,711. 2	4,591	감418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계제실음 생략

아. 관계도서 : 계제실음 생략

자. 서류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454-3532), 체육진흥과(☎454-5594)

군산시 고시 제 2015-146 호

## 도로명주소(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16.

## 군 산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8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고시 제 2015 - 147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1번지 일원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13.

군 산 시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명칭 :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1번지의외 4필지
- 구역면적 : 37,173.60m<sup>2</sup>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문창우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1-7번지 4층

### 4.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2015. 11. 13.

### 5.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요지

####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 |                                      |  |
|--------------------------------------|--|
| (1) 대지면적 : 33,601.0000m <sup>2</sup> | (3) 연 면 적 : 135,791.4316m <sup>2</sup> |
| (2) 건축면적 : 7,067.7928m <sup>2</sup>  | (5) 용 적 률 : 269.9487%                  |
| (4) 건 폐 율 : 21.0345%                 | (6)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7)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16 ~ 26층, 아파트 10동 993세대의 부대복리시설

구분	TYPE	세대수	공 급 면 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조합 및 분양 주택	59A	390	59.9095	20.3713	80.2808	29.5154
	59B	176	59.9094	20.4143	80.3237	29.5312
	73	266	73.8054	25.1570	98.9624	36.3837
	84A	134	84.9832	27.4810	112.4642	41.3477
	84B	21	84.8596	28.0791	112.9387	41.5221
	84C	6	84.9699	31.8904	116.8603	42.9639
근린생활시설 (상가 2동)		건물규모		연면적		
		지하1, 지상1층		1,479.8100		544.0555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공동주택

구분	세대수	60㎡미만		85㎡미만				
		59A	59B	73	84A	84B	84C	
조합원	일반	673	230	110	200	117	16	
	해경서	5	4				1	
일반	308	152	66	66	15	3	6	
보류지	7	4			2	1		
계	993	390	176	266	134	21	6	

※ 상기 세대별 분양세대는 건립세대의 향, 위치, 층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며, 조합원 동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동명칭	분 양 면 적	비 고
1동	592.11㎡	
2동	887.70㎡	
합계	1,479.81㎡	

※ 상가 일반분양 수익금은 상가 조합원의 종전소유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분양수익금으로 하며, 상가조합원의 분양 희망에 따라 1동은 조합원에게 분양하며, 2동은 일반분양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종류	명칭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비고
총계			3,572.60		
소계			3,123.80		
도로	중로 1-74	3~12	689	1,403.80	기존도로 확폭
도로	소로 1-313	2	235	454.70	기존도로 확폭
도로	소로 1-314	2	160	320.40	기존도로 확폭
도로	도로	3	169	495.90	기존도로 확폭
도로	도로	3	78	204.00	가감속차로 신설
도로	도로	3	92	245.00	가감속차로 신설
소계			448.80		
지구대	경찰관파출소		448.80		

-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종류	명칭	면적(m <sup>2</sup> )	비고
경찰청	나운지구대	408.80	

####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 관리처분계획인가후 3개월 (2016년 2월 ~ )

6. 기타 인가사항과 관련한 자료는 군산시 건축과 (☎063-454-3712) 및 조합사무실(063-461-2563)에 비치 보관하고 있습니다.

## 군산시 고시 제 2015-148호

**군산 임피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군산시 임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의거 시행계획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군 산 시 장****I. 사업시행계획 개요**

1. 사 업 명 : 임피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2. 목 적 : 도시민이 함께하는 정주 및 편익공간으로 개발하여 거점기능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함
3. 대상지역의 범위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일원
  - 권역 규모 : 법정리(1개리), 행정리(1개리), 자연마을(4마을)
  - 면 적 : 189.1ha
  - 가구·인구 : 371호(농가 : 119, 비농가 : 252), 인구 841명
4. 사업기간 : 2013년 ~ 2016년 (4개년)
5. 사업내용 :
  - 기초생활기반 : 행복체육센터, 도로개설, 서상마을회관, 휴·쉼터 (휴·공원)

- 지역경관개선 : 가로경관 정비(간판정비), 경관가로등 및 안내표지판
- 지역역량강화 : 교육, 견학, 홍보마케팅, 컨설팅, 정보화, 마을경영지원 등

## 6. 총사업비 : 6,000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계획 (A)	시 행 계 획				비고
		계	기승인	금회승인	향후계획	
합 계	6,000,000 <10,000>	6,000,000 <5,210>	-	6,000,000 <5,210>	-	<>외서 자부담
국 비	4,200,000	4,200,000	-	4,200,000	-	
도 비	900,000	900,000	-	900,000	-	
시 비	900,000	900,000	-	900,000	-	
자 부 담	<10,000>	<5,210>	-	<5,210>	-	

## II. 기능별 사업내역

구 분	사업내용	시행 계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합 계		-	6,000 <5>	
기초 생활 확충 사업	소계	-	4,426	
	행복체육센터	3,984m <sup>2</sup>	3,595	
	도로개설 및 쉼터	2,894m <sup>2</sup>	540	
	서상마을 리모델링	104m <sup>2</sup>	98	
	휴·쉼터	1,370m <sup>2</sup>	193	
지역 경관 개선 사업	소계	-	333 <5>	
	면소재지 가로경관 정비 (간판정비 포함)	화단형 꽃길, 간판정비	84 <5>	
	경관가로등 및 안내표지판 설치	가로등	249	
지역역량 강화사업	교육, 컨설팅 부분등	1식	251	
기타	부대비용 및 잡지출	1식	990	

군산시 공고 제2015-1629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전 열람공고

군산시 고시 제2014-74(2014.07.04.)호로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11월 06일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지역경제과
3. 실시계획인가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63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2) 명 칭 : 상용차부품 복합주행성능 실증시험장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시 설 명	시설결정면적	실시계획인가 면적	비 고
연구시설	435,017m <sup>2</sup>	435,017m <sup>2</sup>	연구시설(시험로, 지원동), 녹지 저류지, 도로, 주차장 조성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변경)

○ 당 초 : 군산시장 (군산시 시청로 17)

(재)전북자동차기술원 (군산시 동장산2길 6)

○ 변 경 : (재)전북자동차기술원 (군산시 동장산2길 6)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14. 07. 04. ~ 2017. 09.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063-454-3532) 또는 지역경제과(☎063-454-26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면적(A)	지분(B)	지분면적(A×B)	성명	주소
				461,662	435,017	-	435,017		
1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5-3	유	4,313	4,313	17/2 0	3,666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647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5-96	제	3,977	727	17/2 0	618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109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3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5-5	구	20,622	20,622	17/2 0	17,529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3,093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4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5-6	염	41,349	41,349	17/2 0	35,147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6,202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5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5-7	잡	2,073	2,073	17/2 0	1,762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311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6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5-8	잡	902	902	17/2 0	767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135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7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5-10	염	48,863	48,863	17/2 0	41,534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7,329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5-11	잡	5,263	5,263	17/2 0	4,474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789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9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01-5	유	18,142	18,142	17/2 0	15,421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2,721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면적(A)	지분(B)	지분면적(A×B)	성명	주소
				461,662	435,017	-	435,017		
10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02-4	채	4,627	2,686	17/2 0	2,283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403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1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03	도	5,693	5,693	17/2 0	4,839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854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2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04	채	1,111	1,111	17/2 0	944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167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3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05	염	46,826	46,826	17/2 0	39,802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7,024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4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06	잡	1,974	1,974	17/2 0	1,678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296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5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07	염	45,312	45,312	17/2 0	38,515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6,797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6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08	잡	1,967	1,967	17/2 0	1,672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295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7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09	염	40,684	40,684	17/2 0	34,581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6,103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8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10	잡	1,993	1,993	17/2 0	1,694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299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토지소유자	
				공부	편입면적(A)	지분(B)	지분면적(A×B)	성명	주소
				461,662	435,017	-	435,017		
19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11	잡	2,152	2,152	17/2 0	1,829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323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0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12	엽	41,183	41,183	17/2 0	35,006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6,177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1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13	엽	40,750	40,750	17/2 0	34,638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6,113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2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14	잡	2,212	2,212	17/2 0	1,880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332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3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17	구	7,871	7,871	17/2 0	6,690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1,181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4	전북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579-1	도	14,688	1,116	17/2 0	949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167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5	전북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581-1	제	8,225	343	17/2 0	292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51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6	전북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635	엽	47,012	47,012	17/2 0	39,960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7,052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7	전북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636	잡	1,878	1,878	17/2 0	1,596	(재)전북자 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20	282	김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4동 203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군산시 공고 제2015-1666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전 열람공고**

군산시 고시 제2013-154호(2013.12.27.)에 의거 군산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서군산축구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변경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11월 6일

1. 열람기간 : 도보게재 다음 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군산시청 체육진흥과, 도시계획과
3.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 요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산북동 335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서군산 축구장 조성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1) 도시계획시설(도로)

구분	시설명	결정조서		금회 실시계획인가			비 고
		폭원	연장	폭원	연장	면적	
도로	중로1-9	20~23	1,225	3	200	508	가감속차로설치

2)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 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시설의 세분	면적(m <sup>2</sup> )	면적(m <sup>2</sup> )	
신설	체육시설	축 구 장	44,677	44,677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체육진흥과)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1) 당초 : 2013. 12. 27. ~ 2015. 12. 31.
- 2) 변경 : 2013. 12. 27. ~ 2018.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체육진흥과 (☎063-454-5596) 및 도시계획과(☎063-454-35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소유자	주 소	소유자	주 소
1	산북동	788-3	답	2,211	30	김종인	군산시 경포천로 66	군산농업 협동조합	군산시 변영로 162 (조촌동, 중미지점)
2	산북동	790-6	도	182	76	국			
3	산북동	790-7	답	1,377	1,158	고병근	군산시 조촌동 907-2		
4	산북동	790-8	도	179	4	국			
5	산북동	790-9	도	159	3	김성기	군산시 산북동 778		
6	산북동	790-12	답	152	3	고병근	익산시 신용동 118-46		
7	산북동	790-14	수	957	698	국			
8	산북동	790-18	대	4	4	군산시			
9	산북동	790-21	답	107	62	군산시			
10	산북동	791-5	도	246	65	윤옥희	군산시 나운동 345		
						김민정	군산시 수송동 33-1		
11	산북동	791-6	답	235	33	윤옥희	군산시 나운동 345		
						김민정	군산시 수송동 33-1		
12	산북동	791-14	답	66	41	윤옥희	군산시 나운동 345		
						김민정	군산시 수송동 33-1		
13	산북동	3177-1	답	2,754	2,754	송정길	군산시 송풍동 785		
14	산북동	3177-2	답	132	132	국			
15	산북동	3178-2	수	13	13	국			
16	산북동	3178-3	답	1,767	1,767	송정길	군산시 송풍동 960-2		
17	산북동	3178-4	답	2,285	2,285	신동우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914-8		
18	산북동	3178-5	답	132	132	농협			
19	산북동	3178-6	수	2	2	국			
20	산북동	3178-7	수	201	201	국			
21	산북동	3179-2	답	4,377	4,377	군산시			
22	산북동	3179-4	수	397	397	국			
23	산북동	3348	답	2,480	2,480	군산시			
24	산북동	3348-1	답	2,479	2,479	군산시			
25	산북동	3349	답	4,959	4,959	군산시			
26	산북동	3350	답	4,959	4,959	군산시			
27	산북동	3351	답	2,810	2,810	군산시			
28	산북동	3351-1	답	2,149	2,149	군산시			
29	산북동	3352	답	4,235	4,235	군산시			
30	산북동	3353	전	724	724	군산시			
31	산북동	3354	전	823	823	군산시			
32	산북동	3355	답	4,136	4,136	군산시			
33	산북동	3479	구	1,197	351	국			
34	산북동	3480	구	30,945	843	국			

## 군산시 공고 제2015 - 1694호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15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5년 11월 1일

군 산 시 장

## 2015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 1.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15. 11. 1 ~ 12. 15(45일)

##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 나. 신고할 행정기관

- 1) 군산시청(산불종합 상황실 063-454-2965), 읍·면·동사무소
-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3.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마을 공동으로 소각하게 되오니 지정한 날짜에 소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에 가시기 전에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http://www.forest.go.kr)) 및 인터넷 포털(Naver, Daum) 지도에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ライター,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5-1695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해망동공영주차장)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14-111(2014.10.17.)호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한

군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11월 13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금동 12-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나. 명 칭 : 해망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시 설 명	시설결정내용 (결정일)	실시계획인가 (인가고시일)	공사완료 (공사완료일)
주차장	주차장 83호	1,872.6㎡ (2014.09.12.)	1,738.6㎡ (2014.10.17.)	1,738.6㎡ (2015.01.12.)

4.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나. 성 명 : 군산시장(관광진흥과)

5. 사업기간 : 2014. 10. 17. ~ 2015. 1. 12.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 군산시 공고 제 2015-1699 호

## 도로명 부여 주민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1. 12.

군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15. 11. 12 ~ 2015. 11. 25(14일간)
2. 대 상 : 도로명 부여 2건(월명공원, 은파호수공원 일원)
3. 도로구간의 기점과 종점 : 붙임 참조
4. 도로의 길이 : 붙임 참조
5. 도로명 및 부여사유 : 붙임 참조
6.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 가. 기 간 : 2015. 11. 12 ~ 2015. 11. 25(14일간)
  - 나. 방 법 : 서면(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 다. 서 식

연번	도로명	의견제출사유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예시) 1	월명호수길		홍길동	010-XXXX-XXXX

## 7. 도로구간 변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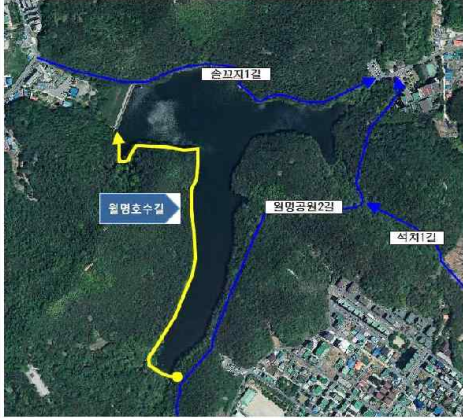
가. 공고된 도로구간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의견수렴 → 제출된 의견 군산시 도로명주소 위원회 상정 → 군산시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확정 → 도로명 고시

## 8. 기타

가. 중심선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사항 :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지리정보계 (☎ 454-3983)

- 붙 임 : 1. 도로명 부여 도면 1부.  
2. 도로명 부여 조서 1부.

도로명(안)	<b>1. 월 명 호 수 길</b>	
부여사유	월명공원 명칭을 인용하여 부여	
시점	소룡동 산120	
종점	소룡동 산120	
길이/폭(m)	920 / 4.7	
위계	길	
간격/구간	20m / 1 ~ 92	
부여방식	고유명사	
유사도로명	월명공원1, 2길	

도로명(안)	<b>2. 은 파 수 변 길</b>	
부여사유	시민이 해당 도로를 명명하던 명칭을 인용	
시점	지곡동 430-6	
종점	나운동 1196-7	
길이/폭(m)	4,720m / 5.5m	
위계	길	
간격/구간	20m / 1 ~ 472	
부여방식	고유명사	
유사도로명	은파순환길	

도로명 부여 조서											
순번	도로관할구역	도로명	위계	도로구간의 시작점	도로구간의 끝지점	도로폭	도로길이	기초간격	시점	종점	도로명부여사유
1	소룡동	월명호수길	길	소룡동 산120	소룡동 산120	4.7m	920m	20	1	92	월명공원 명칭을 인용하여 부여
2	지곡동, 나운동	은파수변길	길	지곡동 430-6	나운동 1196-7	5.5m	4,720m	20	1	472	시민이 해당 도로를 명명하던 명칭을 인용

군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11월 16일

군산시 예규 제28호

군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지역업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 2.“지역건설산업체”란 시의 관할구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건설  
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를 지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지역업체 보호사항

제4조(지역업체의 보호 및 육성) ①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업체 보호 및 육성과 지역업체 관련 제도개선, 기술정보 제공,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  
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  
록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  
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사용) ①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나 물품의 구  
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

여야 한다.

② 시에서 구매하는 각종 행정비품 및 소모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업체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제6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참가자격을 시의 관할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일부 하도급) ① 종합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종합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물량 중 50퍼센트 이상을 지역건설산업체에게 하도급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종합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금을 하도급 업체에 직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분할발주 등)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사업목적의 달성 및 유지관리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 할 수 있다.

### 제3장 지역업체 보호 점검사항

제9조(실태조사) ① 지역건설 산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원도급 및 하도급 참여·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생산자재 사용 및 지역인력의 참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 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7일전까지 조사일시, 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지역건설 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11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